

‘고려강수(高麗綱首)’ 탁영(卓榮) · 서덕영(徐德榮) 관련 사료의 재검토*

이진한**

1. 머리말
2. 『송사』 고려전의 고려강수 탁영과 서덕영
3. 송도강 서덕영과 고려강수
4. 『고려사』와 『대각국사집』의 송도강과 강수
5. 맺음말

1. 머리말

고려시대 무역사에 관한 선구적인 연구에서 송상의 왕래가 활발했던 반면에 고려 해상의 활동은 다소 부진했다는 견해가 제시된 이래 그 동안 이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나¹⁾ 2019년에 출간된 『고려상인과 동아시아 무역사』에서 통설과는 다른 주장이 제시되었다. 주요한 논지는 고려 상인의 활동이 적지 않았다는 것으로 저자는 한국의 사서 뿐 아니라 중국 송대와 원대 문헌을 광범위

* 본고는 2021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특별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1) 자세히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고려 상인의 중국에의 활동은 신라말에 비하여 자못 소극적이었으며, 그것은 원래 中古의 외국 무역은 왕정을 중심으로 한 봉건 귀족군의 物的 要求에 의하여 促致되었다. 당시 大陸物化에 대한 고려 왕정과 봉건 귀족군의 수요는 고려 상인의 적극 활동을 기다리기 전에 송상에 의해 대개는 공급되었을 것이어서 고려 상인 활동이 소극화되었다[金庠基, 1937 『麗宋貿易小考』 『震檀學報』 7(1948 『東方文化交流史論攷』, 乙酉文化社, 67-68면에 재수록)].

하게 찾아내어 고려 상인의 활동을 복원하고 나름 경제적으로 밝은 면을 밝혀냈다고 의미를 부여하였다.²⁾ 이에 출간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중국 송대사와 고려 시대사 전공자가 쓴 세 편의 비평논문이 잇달아 나올 만큼 학계의 큰 관심을 받았다.³⁾ 그 가운데 한 평자는 ‘비록 제목은 ‘고려상인’으로 되어 있지만, 고려라고 하는 일국사적 관점에만 국한되지 않고, 중세 동아시아 해상(海上)이라는 국가나 민족을 넘어선 공간의 맥락에서 ‘고려상인’을 복원하고 있다’고 그 의의를 평가하였다.⁴⁾

필자도 고려시대 송상왕래를 연구한 바 있어서 스스로의 성과를 반추하면서 저서를 읽었는데,⁵⁾ 동아시아 무역사에 관해 새롭게 알게 된 것도 많고, 연구 방

2) 저자의 논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김영제, 2019 『고려상인과 동아시아 무역사』, 푸른역사의 머리말의 주장을 참고하여 서술한 것이다. 한편, 저자는 ‘고려시대 무역은 대부분 한국사 전공자들이 다루어왔다고 하면서 자신이 중국사 전공자로서 감히 이 분야에 도전하였다’고 하였다(김영제, 『머리말』 같은 책, 9-10면). 하지만, 이 분야의 국내 최초 연구자가 중국사 전공의 김상기 교수였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아니며, 그의 30년대에서 50년대에 이르는 연구 성과는 저자가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저자는 자신의 저서에 대해 ‘필자가 지금까지 10년에 걸쳐 발표한 논문들을 기반으로 하였다. 물론 그것을 그대로 모은 것이 아니라 기존의 발표 논문에서 오류를 수정하거나 번잡한 부분을 빼기도 하고, 나아가 새로이 습득한 사료나 자료를 추가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이 필자로서는 최종본에 해당하는 셈이다’(김영제, 『머리말』 같은 책, 10면)라고 하였다. 따라서 각 장절의 논문을 인용할 때 이 발표된 논문의 서지사항은 생략하겠다.
※ 본고에서는 서술의 편의상 책의 저자인 김영제를 대신하여 저자로, 그 책은 저서로, 비평논문의 필자는 평자로, 이 글의 집필자는 필자라고 쓰겠다.

3) 김성규, 2019 『서평—『고려상인과 동아시아 무역사』(서울, 푸른역사, 2019)』 『歷史學報』 244; 김한신, 2019 『서평: 중세 동아시아 해상교역의 재구성 —김영제 지음, 『고려상인과 동아시아 무역사』, 푸른역사, 2019—』 『東洋史學研究』 149; 이강한, 2020 『서평: 김영제 지음, 『고려상인과 동아시아 무역사』, 푸른역사, 2019년, 314면』 『경제사학』 72. 이상의 비평은 이하의 서술에서 편의상 서평으로 줄여서 인용하겠다.

4) 김한신, 서평, 324면.

5) 저서의 최초 서평에서 ‘중국사 연구자의 시각에서 제기된 작지 않은 문제 제기가 고려사 측에서는 낯설고 이색적일 수 있지만, 동 시기 일본 등지에서도 나타나고 있던 상인의 귀화 현상과 과급 효과가 고려에는 어떻게 미치고 또 받아들였는지 이제 고려사 측에서 화답해야 할 차례이다’라고 하였다(김성규, 서평, 359면). 하지만 저서의 논지에 대해 반론을 요청해야 할 연구자는 고려시대사가 아니라 동아시아 교류사 전공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그러나 전공을 불문하고 저서에 문제점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을 해주는 것이 이 분야 학문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필자가 이 글을 쓰게 되었다.

법론에 대해서도 계발되는 바가 있었다. 특히 필자의 선행 연구에서 고려 해상 활동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지 않고 통설에 따라 부정적으로 보았으나,⁶⁾ 저서에서 제시된 다양한 자료 중에 미처보지 못했거나 간과한 것들이 적지 않았음을 반성하기도 하였다.

필자는 고려시대 전공자여서 저자만큼 중국 송원 시기 무역사에 대해 깊이 있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분야에 관한 1930년대의 고전적 연구에서부터 최근 연구 성과까지 두루 섭렵하여 저자의 주장이 당대의 실정에 부합하는지를 다시 되새겨보았다. 그 결과 저자가 새롭게 밝혀낸 여러 가지 사실에 수긍되는 점도 있었으나, 저자가 자신의 견해를 강조하다가 선행 연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사실과 다소 어긋나게 이해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이 제2부 <해상 왕래의 실태>에 있는 『송도강 탁영과 서덕영의 정체』와 『고려 도강을 이용한 해상무역』 부분이다. 저자는 『고려사』에 송도강으로 기록된 탁영(卓榮)과 서덕영(徐德榮)이라는 인물이 『송사』 고려전에 고려강수로 적혀 있는데, 탁영이나 서덕영이 몰고갔던 배를 왜 고려선이라고 받아들였는지에 대해 고찰하고, 송나라의 법령을 들어 그들이 고려에 귀화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하였다. 이어 저자는 고려가 탁영과 서덕영을 받아주어 고려를 위한 긍정적인 활동에 참여시키고, 고려 상인은 이들 도강을 이용하여 해상무역을 하였다는 것을 밝혔다고 주장하였다.⁷⁾ 이와 같이 귀화한 운선업자 송도강의 존재는 송상에 가려져 있던 고려 해상의 활동을 새롭게 주목하고, 고려해상이 송을 왕래하며 무역했다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이 저서의 핵심 논거가 되었다.⁸⁾

6) 고려 대외 무역과 정책에 대해 고찰하였는데, 海商의 활동은 주로 고려 초에만 있고, 그 이후 자료가 적을 뿐 아니라 송상의 왕래가 잦은 상황에서 고려 상인들이 독자적인 선단을 운영하며 수익을 거두기 어려웠을 것이며, 성종대 이후 대외무역 정책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었다는 결론을 냈다[李鎭漢, 2005 『高麗前期 對外貿易과 그 政策』 『九州大學韓國研究センター年報』 5(2011 『高麗時代 宋商往來 研究』, 景仁文化社, 48-64면에 재수록)].

7) 김영제, 『머리말』 앞의 책, 13-14면. 논지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다시 본문의 해당 부분을 인용할 것이다.

8) 김영제, 2019 『송도강 탁영과 서덕영의 정체』 앞의 책. 이 장에서는 『高麗史』에 송도강으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저서 가운데 송도강 탁영과 서덕영이 고려에 귀화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먼저 고려에 귀화했던 송도강으로 단정한 탁영과 서덕영에 관련된 사료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논지가正当한지를 확인할 것이다. 다음으로 저자가 탁영과 서덕영에서 출발하여 『고려사』 세가에 기록된 다른 송도강들도 고려에 귀화하였을 가능성을 직간접적으로 내비쳤기 때문에, ‘송도강’ 사례 가운데 필자가 다루지 않은 것까지 폭넓게 살펴보고 주장에 합당한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고는 비평 논문의 특성상 고려 해상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보는 저자의 견해에 대해, 그저 긍정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근거를 많이 제시할 것이다. 필자의 비평이 향후 저자가 ‘고려 해상의 동아시아 무역 활동’을 재인식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로 기록된 탁영과 서덕영이라는 인물이 『송사』 고려전에 고려강수로 적혀있는데, 탁영이나 서덕영이 물고갔던 배를 왜 고려선이라 받아들였는지에 대해 송조 중국 법령을 근거로 살펴서 고려 귀화인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김영제, 2019 『고려 도강都綱을 이용한 해상 무역』 앞의 책. 이 장에서 저자는 『송사』 고려전에 기록된 고려강수 탁영과 서덕영에 대해 다양한 사료를 통해 그들을 당시 고려에 거주하던 화교해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사실은 고려 쪽에서 굳이 배를 만들거나 중국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할 필요가 없었으며 가만히 앉아서도 사람이나 첩저선과 같은 배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며 고려가 송 강수를 받아준 이유를 설명하였다(김영제, 앞의 책, 165면). 더욱이 “『高麗史』에서는 탁영이나 서덕영이 송에서 고려로 왔다고 했지만, 사실은 고려에 살면서 송을 오가고 있었다. 고려라고 하는 한 국가에 귀화한 도강이 1·2 명 가량 있었을 것이라고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려사 세가에 나타나는 송도강 가운데 고려에 투화했던 사람들도 꽤 있었다고 서술하였다”(김영제, 앞의 책, 175면)라며 탁영과 서덕영과 같은 유형의 인물들이 더 많이 있었을 것임을 암시하였다. 저자 논지의 핵심이 되는 두 장의 논문을 비교해보면, 앞에서는 송도강의 정체를 파악한 뒤에 다음장에서는 고려도강으로 명칭을 바꾸어 송도강이 고려 사람이 되었음을 나타냈다. 그러나 팔관회에서 고려국왕에게 헌상하는 의례를 행하는 자도 송강수, 대송도강이었다는 점에서 실증의 여부를 떠나서 고려도강은 적절한 용어의 사용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결국 저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려도강이 고려 사람이 아니고, 송사의 고려강수도 송상이므로 제목에서 ‘고려강수’라고 하였으며, 이후에는 편의상 ‘ ’를 생략하였다.

2. 『송사』 고려전의 고려강수 탁영과 서덕영

저자가 송도강이 고려에 귀화했다고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 사료가 『송사』 고려전에서 탁영과 서덕영에 대해 ‘고려강수’라고 한 것이며⁹⁾ 탁영과 서덕영이 고려에 투화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와 송의 무역에 대한 초기 업적에서 이미 제시된 바 있다.¹⁰⁾

송대 문헌에 등장하는 고려상인의 정체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진 것은 ‘일본 상인’을 연구하였던 일본사학자들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 비교적 깊이 있게 천착한 연구에서는 현대의 민족국가적 관점으로 ‘고려상인’, ‘일본상인’을 파악한 기존의 인식을 비판하고, ‘고려상인’이나 ‘일본상인’이란 고려나 일본의 의뢰를 받아 송에 내항한 상인을 지칭하는 말이며 그들의 민족적 출신은 대부분 중국인으로 기존의 송 상인들과 근본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이 지적되었다.¹¹⁾

이어 1160년대 고려상인·일본상인 등으로 불리는 해상이 송에 내항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송 해상에 의해 독점되었던 동지나해 상권에 새로운 세력으로서 고려인과 일본인이 들어왔으나 고려·일본 사료에서 그 구체적 예를 제시할 수 없고, 사료에 보이는 무역선의 간부층은 변치 않고 송 해상이었는데, 1250년대에 명주에서 지부(知府)를 맡아 무역에 관여했던 오잠은 고려의 재래선(在來船)이

9) 김영제, 2019 『송도강 탁영과 서덕영의 정체』 앞의 책, 134-136면. 이에 대해서 저자가 분석한 사료를 정밀하게 재검토할 것이다.

10) 김상기는 고려에 온 송상에 관한 표를 작성하면서, 표의 주에서 “『宋史』 고려전에 의하면 卓榮은 고려 강수로 보이나니, 문종시 송의 귀화인 黃忻을 도강으로 부른 것을 보면 탁영도 고려에 귀화한 자인 듯하며, 또는 고려와의 통상을 專務로 하는 송상의 매관이 고려 강수의 칭이 붙게 된 듯도 하다. 서덕영도 『宋史』 고려전에 高麗 綱首라 하고 또 고려인과 같이 취급한 것으로 보아 송상의 귀화한 자인 듯하다”라고 하였다[金庠基, 1937 『麗宋貿易小考』, 『震檀學報』 7(1948 『東方文化交流史論攷』, 乙酉文化社, 85-86면, 미주 10, 미주 11)]. 그러나 그는 이 특이한 사료를 근거로 더 이상 논지를 확대하지 않았다.

11) 榎本涉, 2001 『宋代의 日本商人의 再檢討』, 『史學雜誌』 110-2(2007 『東アジア海域と日中交流: 九~一四世紀』, 吉川弘文館). 高銀美, 2015 『宋代 明州市舶司의 變遷과 무역조건』, 『大東文化研究』 89, 280-281면에서 재인용함.

원양항해를 견디지 못한다고 명언하고 있으므로 송대의 사료에서 ‘고려상인’·‘일본상인’이 의미하는 것은 고려·일본에서 온 상인이고 송 해상을 배제하는 개념은 아니었다고 한다.¹²⁾

그리고 11~13세기의 동지나해를 왕래하던 해상의 활동은 대체로 화인(華人)이 중심을 이루었으며, 12세기 이후의 중국사료에 나오는 ‘일본상인’, ‘왜(倭)상’, ‘왜(倭)선’, ‘고려상인’, ‘고려선’ 등은 ‘일본’과 ‘고려’의 땅에서 방문한 상인·상선을 가리키는 것이 대부분이고 민족으로서 일본인·고려인과 그 배를 바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당시 해상의 민족 구분과 그 배의 귀속 국가는 반드시 상호 일치하거나 일정하지 않다는 설명도 있었다.¹³⁾ 필자도 기존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송대 사서에 기록된 고려 상인은 고려초에 송에 오던 고려 사람 뿐 아니라 고려를 왕래하던 송상을 뜻하며, 서덕영의 사례를 보건대, 송 정부가 고려를 왕래하는 상인을 고려국 강수라고 하였다고 생각하였다.¹⁴⁾

최근에는 1170년 이후 13세기 전반의 50년간 송상의 내항 기사가 적어졌는데도 송상의 활동이 확인된다는 사실은 양국 간의 무역을 담당하는 주체가 송 시 박사의 공빙(公憑)을 받아 무역하던 상인에서 고려의 의뢰를 받아 오가는 상인으로 전환되면서 고려 조정이 해당 상인의 왕래를 기존의 송상처럼 기록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나왔다.¹⁵⁾ 12세기 후반 이후 중국 사서에 기록된 해상은 국적보다 어떤 나라의 의뢰를 받아 활동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국명을 적었으므로 ‘고려’해상 또는 ‘고려’강수를 고려를 거점으로

12) 榎本涉, 2010 『東シナ海の宋海商』 『日本の對外關係 3: 通交・通商圏の擴大』(荒野泰典·石井正敏·村井章介 編), 吉川弘文館, 55면.

13) 森平雅彦, 2013 『ひらかれた海 1250~1350』 『東アジア海域に漕ぎだす 海から見た歴史』(羽田正 編), 東京大學出版會, 28면. 인용 부호는 森平 교수가 한 것을 그대로 옮겼다.

14) 李鎮漢, 2010 『高麗 武臣政權期 宋商의 往來』 『民族文化』 36(2011 『高麗時代 宋商往來研究』, 景仁文化社, 179면에 재수록, 각주 32). 필자는 이와 더불어 “송상으로 고려에 와서 투화하고 계속 왕래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송 정부는 이들도 고려인으로 인식하였을 것이다”라고 한 바 있으나, 본고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건대 고려에 투화한 송상이 송을 계속 다닐 수 없으며, 송 정부가 고려인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이 주장은 철회 하겠다.

15) 高銀美, 2018 『고려·일본 송간의 무역사이클의 변화』 『大東文化研究』 103, 104면.

활동하는 사람으로 판단하는 것이다.¹⁶⁾ 반면 저자는 고려강수 탁영과 서덕영이 고려에 귀화하였으며 배를 소유한 운선업자로 양국을 왕래하며, 고려 해상들의 활동을 도왔다고 주장하였다.¹⁷⁾ 이는 동아시아 해상에 관한 수많은 선행 연구자들조차 상상하지 못한 매우 새로운 견해로서 비평가들의 관심을 끌었다.¹⁸⁾ 그럼 저자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핵심 논거가 되는 사료부터 하나하나 재검토해보겠다. 다음은 ‘고려강수’라는 명칭이 나오는 『송사』 고려전의 기사이다.

- A1. (紹興二年 閏四月) 是月 定海縣言 民亡入高麗者約八十人 願奉表還國 詔候到日 高麗綱首卓榮等 量與推恩¹⁹⁾
- A2. (紹興) 三十二年 三月 高麗綱首徐德榮 詣明州言 本國欲遣賀使 守臣韓仲通以聞 殿中侍御史吳芾奏曰 高麗與金人接壤 昔稚圭之來 朝廷懼其爲間 亟遣還 今兩國交兵 德榮之請 得無可疑 使其果來 猶恐不測 萬一不至 貽笑遠方 詔止之²⁰⁾

A1에서는 1132년(인종 10, 송 소흥 2) 윤4월에 정해현이 말하기를 백성으로 고려에 망명해 들어간 자 약 80인이 표를 받들어 환국하고자 한다고 하니 조하

16) 이 견해는 특정 시기 이후의 고려 상인에 대한 명칭 변화를 깊이 있게 살펴보았는데, 공빙을 받고 해외로 나간 송의 해상은 반드시 자국으로 귀국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음에도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 고려강수와 일본강수로 불렸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문제는 후고에서 공빙 등을 고찰하며 다시 한번 다룰 것이다.

17) 김영제, 주 8의 논문.

18) 저자의 주장에 대해 김한신 교수는 서평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高麗史』에 송상, 송도강, 일본상인, 일본 도강 등으로 구분하여 호칭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도적인 구분은 도강이라고 호칭되는 존재가 송상이나 일본 상인과 구분되는 존재임을 암시하고 있다”(김한신, 서평, 328면). 그리고 이강한 교수도 “김영제는 고려와 송 사이에서 활동했던 상인들을 언급하면서 마지막으로 송의 ‘도강’을 거론하였다. 그들은 선박을 보유한 존재로 관련 기사에 등장한 점을 들어 ‘선박주’로서 특히 운선업에 종사했던 자들로 규정했음이 주목된다”고 하였다(이강한, 서평, 84면).

19) 『宋史』 권487, 列傳246 外國3 高麗. 본고가 게재된 학술지는 한문 사료를 한글로 풀어 싣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고의 주된 논지가 논쟁이 되는 사료를 검토하고 재해석하는 것이므로 원문을 그대로 두었으며, 이점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의 자문을 받았음을 밝혀둔다.

20) 『宋史』 권487, 列傳246 外國3 高麗.

기를 ‘도착하는 날을 기다려 고려강수 탁영 등에게 헤아려 추은(推恩)하라’고 하였다. A2는 서덕영의 활동을 알려주고 있다. 1162년(의종 16, 송 紹興 32) 3월에 고려강수 서덕영이 명주에 와서 이르기를 ‘본국이 축하 사절[賀使]을 보내려 합니다’라고 하였고, 수신(守臣) 한중통(韓仲通)이 (황제에게) 보고하였다. 전중시어사 오불(吳芾)이 아뢰어 말하기를 ‘고려는 금인(金人)과 땅을 맞대고 있고, 김치규가 왔을 때 조정은 간자(間者)일 것을 두려워하여 급히 되돌려 보냈습니다. 지금 양국이 전쟁을 하고 있고[交兵] 서덕영의 요청에 대해 의심할 바가 없어도 사신이 과연 온다면 오히려 불측할까 우려되고, 만일 오지 않는다면 원방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며, 이에 조하여 (고려의 사신 파견을) 그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다.

A1의 탁영과 A2의 서덕영이 모두 고려강수라는 직함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자는 고려강수를 고려의 강수로 해석하고, 더 나아가 두 사람을 고려인 강수로 주장하였다. 원 사료를 그대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볼 여지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선학이 고려에 왔던 송상의 기록을 표로 만들면서 언급한 바 있었다.²¹⁾ 그러나 A1의 고려강수 탁영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한 것으로 보건대 금·송의 전란 때 고려로 망명한 송나라 사람을 귀환시키는데 기여한 인물이 탁영이었던 것 같다. 망명자들이 송 황제의 표를 받들어 돌아온다고 했던 것은 누군가 그들이 고려에 있음을 알고 송에 가서 그 사실을 전하고 황제의 조서를 받아 전달한 인물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아마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추은을 받게 될 탁영이었을 것인데, 송나라 사람이 황제의 명을 받아 고려에 있던 송나라 사람을 귀환시키고, 그 일을 한 공로로 은혜를 베푸는 일은 당연하다. 반면에 고려에 망명한 자를 데려오는 일을 황제의 명을 받은 (귀화)고려인이 수행했을 뿐 아니라 고려인에게 상까지 주려고 했다는 것은 사리에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A2의 앞부분은 서덕영에게서 ‘본국이 축하사절을 보내고자 한다’는 뜻을 전해 받고, 그 사실을 조정에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 때 서덕영이 자신을 고려강수라고 칭하였는지, 아니면 조정에 전달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 명주에서 지칭

21) 김상기, 앞의 책, 주 10 참조.

한 것인지, 송사의 찬자가 맥락을 이해하기 쉽도록 붙인 직함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 기록에서는 서덕영이 명주 관아에 와서 말한 것[詣明州言]처럼 되어 있으나 고려가 송에 공식 사절을 보낸다는 중대한 사안을 단순히 상인에게 구두로 전달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여기서 사용된 ‘본국’이라는 표현은 서덕영이 가져온 ‘문서’—禮賓省帖—에 적힌 것을 명주가 조정에 보고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일 뿐이니 서덕영이 고려인이라는 것의 증거는 아니다.

일단 ‘고려강수’ 탁영과 서덕영이 기록된 『송사』 고려전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고려인이라기보다 그들을 송상으로 보는 것이 정황상 더 어울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두 사람의 정체에 더욱 접근하기 위해 다른 사료의 내용과 비교해보도록 하자. 아래는 탁영에 관한 두 개의 기록 가운데 나머지 하나이다.

B1. (인종 9년 하4월) 己丑 宋都綱卓榮來奏云 少師劉光世 遣將黃夜叉 將大兵過江 擊破金人 橫尸蔽野 降三千人 半是漢人 自兩浙至河北 僅平安 皇帝駐蹕越州 改建炎五年爲紹興元年 王以榮所奏狀 示宰輔曰 前者侯章歸中孚來請援 不能從 又楊應誠欲假道入金 又不從 自念祖宗以來 與宋結好 蒙恩至厚 而再不從命 其如信義何 崔弘宰等皆言 遣一介行李告奏便²²⁾

B1은 『송사』 고려전에서 1132년에 고려강수였다고 하는 탁영에 관한 『고려사』의 기록이다. 『高麗史』에서는 송 도강으로 고려에 와서 송이 승전한 일과 건염 5년(1131, 인종 9)을 소흥 원년으로 연호를 바꾼 일을 아뢰었다고 하자, 인종은 송나라가 도움을 청했을 때 고려가 두 번이나 거절한 것을 들며 대책을 물었고, 최홍재가 사신을 송에 보내 아뢰는 편이 좋겠다[一介行李告奏便]는 건의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 내용을 보면 탁영은 송 황제 또는 송 정부의 지시를 받고 고려에 전하러 왔던 것 같다. 이 기사에서 ‘송도강 탁영’이라고 적었으므로 탁영의 지위는 도강이며, 도강 앞에 적은 ‘송’이 국적을 나타낸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예를 들어 “대식국 열라자(悅羅慈) 등 100인이 와서 방물을 바쳤다”,²³⁾

22) 『高麗史』 권16, 世家: 『高麗史節要』 권9, 인종 9년 하4월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으나 기사의 분량이 조금 적다. “宋都綱卓榮來奏云 自兩浙至河北 僅平安 皇帝駐蹕越州 改建炎五年爲紹興元年 王諭宰輔曰 前者侯章歸中孚來請援 不能從 又楊應誠欲假道入金 又不從 自念祖宗以來 與宋結好 蒙恩至厚 而再不從命 其如信義何 崔弘宰等皆言 遣使告奏便”

“동여진 귀덕장군 거여울(居閻鬱) 등이 내조(來朝)하였다”,²⁴⁾ “일본국 선두(船頭) 중리(重利) 등 39인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²⁵⁾는 사례 등에서도 ‘대식’, ‘일본’, ‘여진’ 등은 그 사람이 속한 국가 또는 민족을 나타내는 것이다. B1을 보아도 탁영이 고려에 귀화한 자라는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송상으로서 송 조정의 명을 수행하였다고 이해된다.

이 탁영에 대해 일찍이 A1과 B1의 기록을 대조하고, 그는 고려에서 송 도강으로 불린 송 해상이었지만, 『송사』에서는 그를 고려강수라고 하였는데 고려 사신과 함께 송의 망명자를 데려왔기 때문에 고려에서 보냈다는 형식을 취하여 ‘고려강수’라고 기록하였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다.²⁶⁾ A1의 『송사』에서 탁영은 1132년에 고려강수로, B1의 『고려사』에서 1131년에 송도강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양자 간에 국적이 다른 셈이다. 그러나 송나라 사람이 해를 달리하여 고려 사람으로 바뀐 것이 아닐 것이므로 두 사료 가운데 하나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어느 한 쪽의 기록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해결해주는 실마리가 두 기사의 연관성이다. B1의 1131년 『고려사』 기록을 보면 탁영이 중국의 정세를 알리고 송의 연호가 바뀌었음을 알리러 왔다고 하므로 송 정부로부터 공적인 임무를 부여받고 고려에 왔을 것이다. 그리고 A1의 1132년 『송사』의 일은 정해현이 전해에 고려에 갔다가 돌아온 탁영의 활약으로 금과 송의 전쟁 중에 고려에 망명했던 송나라 사람 80여인이 황제의 표를 받들어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알려왔으니 그것이 실현되는 날에 고려강수 탁영에게 헤아려 은상을 내려달라고 건의한 것이다. 탁영이 고려에 망명한 사람을 직접 찾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송 황제의 명을 전하며 고려 조정에 도움을 요청하고 탁영이 귀환하는 배에 태울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고려의 협조 배경에는 두 차례 송 황제의 도움 요청을 거절하여 소원해진 양국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뜻이 담겨있다.

23) 『高麗史』 권5, 世家 顯宗 15년 9월 “是月 大食國悅羅慈等一百人來獻方物 大食國在西域.”

24) 『高麗史』 권5, 世家 顯宗 17년 춘정월 “壬辰 東女眞歸德將軍居閻鬱等來朝.”

25) 『高麗史』 권9, 世家 文宗 28년 “二月 庚午 日本國船頭重利等三十九人來獻土物.”

26) 榎本涉, 앞의 논문, 81-82면.

결국 B1의 내용은 1131년에 고려에서 송나라 망명자 80여인을 송환하는 특별한 공로를 세운 고려강수 탁영에게 상을 주라는 것이다. 그 이전에 탁영이 송 조정의 명을 받고 고려에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까지를 종합해보건대 ‘고려강수’의 ‘고려’를 탁영의 국적으로 해석하면 어색하지만, 탁영을 송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경우 2년간 그의 전체 활동상과 송 황제의 포상이 자연스럽게 설명이 된다.

3. 송도강 서덕영과 고려강수

고려강수이자 송도강이었던 탁영과 서덕영에 관한 기록을 검토하였고, 탁영에 관련된 사료를 상세히 분석한 결과 고려인으로 국적을 바꾸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이제 고려 강수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탁영과 비슷한 유형의 기록을 더 많이 남겨놓은 서덕영을 고찰하여 보자. 그에 관한 『고려사』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 C1. (의종 3년 추7월) 宋都綱丘迪·徐德榮等百五人來²⁷⁾
- C2. (의종 5년 추7월) 宋都綱丘迪等三十五人 徐德英等六十七人來²⁸⁾
- C3. (의종 16년 6월) 庚寅 宋都綱徐德榮等八十九人 吳世全等一百四十二人來²⁹⁾
- C4. (의종 17년 추7월) 乙巳 宋都綱徐德榮等來 獻孔雀及珍翫之物 德榮又以宋帝密旨 獻金銀合二副盛以沈香³⁰⁾
- C5. (의종 18년 3월) 壬寅 遣借內殿崇班趙冬曦·借右侍禁朴光通 如宋 獻鑰銅器 報徐德榮之來也³¹⁾
- C6. (명종 3년 6월) 宋遣徐德榮來³²⁾

C1은 1149년에 송도강 구적·서덕영 등 105인이 왔다는 것이고, C2는 1151년

27) 『高麗史』 권17, 世家.

28) 『高麗史』 권17, 世家.

29) 『高麗史』 권18, 世家; 『高麗史節要』 권11, 의종 17년 추7월.

30) 『高麗史』 권18, 世家.

31) 『高麗史』 권18, 世家.

32) 『高麗史』 권19, 世家; 『高麗史節要』 권12, 명종 3년 6월.

7월에 송도강 구적 등 35인과 서덕영(徐德英) 등 67인이 왔다는 것이며, C3은 1162년 6월에 송도강 서덕영 등 89인과 오세전 등 142인이 왔다는 기록이다. C4는 송도강 서덕영 등이 와서 공작 및 진완지물(珍翫之物)을 바치고, 또 송 황제의 밀지와 금은합(金銀合) 2부에 침향을 싸서 바쳤다는 내용이다. C5는 차내전 송반 조동희와 차우시금 박광통을 송에 보내 유동기를 바쳤는데 서덕영이 온 것에 대한 보답이라는 것이다. 마지막 C6에서는 송이 서덕영을 보내왔다고 한다.

이 가운데 C1~4는 서덕영이 고려에 왔다는 내용인데, C4에서는 서덕영이 고려에 와서 구체적으로 한 일이 있으며, C6은 송이 보내왔다[遣 … 來]는 것으로 내용은 유사해도 표현이 조금 다르다. 그리고 C5는 그 전해에 서덕영이 와서 송 황제의 밀지를 보내준 것에 대해 보답으로 고려에서 사절을 보냈다고 하는 것인데, 서덕영이 온 지 1년 만에 가는 것이어서 탁영의 사례와 같이 서덕영이 돌아가는 편에 갈 수도 있으므로 서덕영의 고려 왕래 회수에 포함해야할지의 여부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³³⁾

저자는 서덕영이 고려에 왔다는 것만을 보전대 1149년 3월부터 1173년 6월까지 적어도 24년 이상이 되며, C5에서 소식이나 황악(黃鵠)이 자국 선박에 외국의 입공사절을 태울 수 없도록 한 송나라 조정의 법령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했던 것은 서덕영이 고려에서 평생을 살며 해상활동에 종사했던 한족계 고려해상, 달리 말하면 화교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³⁴⁾

그러나 그의 국적과 관련하여 『고려사』의 기록은 한결같이 그를 송나라 사람—송 도강—이라고 적어놓았다. C1~6의 사료 가운데 C5를 제외하고 모두 송도강 서덕영이 왔다고 했으며, C6에서 서덕영을 ‘송이 보냈다[宋遣]’고 한 것은 그가 송의 조정이나 지방관의 명을 수행하기 위해 고려에 왔으므로 이와 같이 표현했을 것이다. 중동팔관회 의례에 참여하는 송도강을 송강수로 바꾸어 불렀던 것처럼

33) 저자는 그 전해에 왔던 일로 고려에서 송에 사신을 보낸 것이니 서덕영이 고려에 온 것은 모두 6회라고 하였다(김영제, 2019 『송도강 탁영과 서덕영의 정체』 앞의 책, 152면).

34) 저자는 서덕영이 고려 사신을 데리고 송에 왔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 금령을 어겼으므로 처벌되어야 함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그가 송나라 사람이 아니라 고려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김영제, 2019 『송도강 탁영과 서덕영의 정체』 앞의 책, 154면).

송 도강은 송나라에서 온 강수에 대한 고려식 칭호라고 보는 것이 맞다.³⁵⁾

그리고 서덕영과 함께 온 송상의 인원수는 서덕영이 운선업자인지 여부를 가늠하는 데 참고가 된다. 1149년 7월에 구적·서덕영 등 105인이 왔고, 1151년 구적 등 35인, 서덕영(英) 등 67인이 왔다고 한다. 1149년에 두 도강의 전체 인원이 105인이었고, 1151년에는 각각의 인원을 적었는데 총합은 102인 정도로 비슷한 것으로 보아 1149년에도 서덕영의 상단은 67명 내외였을 것이다. C1~3에서 송도강의 이름과 인원이 함께 기록된 것은 함께 입국했음을 뜻하므로, 서덕영은 두 차례 구적과 함께, 다음에는 오세전과 함께 같은 배편으로 왔을 것이다.³⁶⁾

이후 9년이 지난 1161년에 서덕영이 고려에 다시 왔을 때는 서덕영은 89인을,

35) 송도강이 송강수와 같은 뜻이라는 것은 다음 의례에서 두 칭호가 번갈아 사용되고 있는 것을 통해 확인된다. 각문이 인도할 때는 송강수로, 각문이 조하를 아릴 때는 대송도강이라고 칭호를 달리 사용하였다. 『高麗史』 권69, 禮11 嘉禮雜儀 仲冬八關會儀 “大會日坐殿…次曲直華蓋 分東西上階 輿輦符寶等 竝還列儀鳳門內訖 閣門引宋綱首等 就聞辭位立定 閣門奏聞辭云 大宋都綱某等祇候朝賀 訖引就拜位跪進物狀 閣門接上俛伏興舍人喝 再拜行頭奏聖躬萬福泰山呼再拜 行頭進步退復位奏山呼再拜 次傳宣賜坐看樂兼賜所司酒食訖 奏山呼再拜卷班西出就幕次 次引東西蕃子 次引耽羅人 朝賀及傳宣禮 並與宋綱首同.” 저자는 송도강의 실체를 알려주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기사를 인용하지 않았는데, 저자의 주장과 같이 송도강이 고려에 귀화한 사람이라면, 팔관회 의례에 참석하여 여진이나 탐라인과 같이 사신의 역할을 할 수 없다.

36) 송대 해상 규모의 선박의 상황을 알려주는 기록에 의하면, ‘海舶의 큰 것은 수백 인, 작은 것은 100여 인을 태우며, 巨商으로 綱首·副綱首·雜事を 삼으며 市舶司가 朱記를 주고 그 무리에 그 무리를 篙로 다스리는 것을 허용하였고, 사망자가 있으면 그 재산을 적몰하였다. …外國에는 비록 商稅가 없으나 誅求하는데 獻送이라고 한다. 貨物의 多寡를 따지지 않고 하나의 예로 책망하기 때문에 小舶은 불리하다. 船舶의 깊이와 너비는 각 수십 장이며 상인이 분점하여 화물을 쌓았는데 한 사람에게 수척 정도가 허용된다. 배의 아래에 물건을 쌓고 밤에는 그 위에서 잤다. 화물은 陶器가 많았고 大小가 相套하여 틈이 없었다’고 하였다(『萍洲可談』, 周彧 “甲令 海舶大者數百人, 小者百餘人 以巨商爲綱首·副綱首·雜事 市舶司給朱記 許用篙治其徒 有死亡者 籍其財 …外國雖無商稅 以誅求 謂之獻送 不論貨物多寡 一例責之 故不利小舶也 船舶深闊各數十丈 商人分占貯貨 人得數尺許 下以貯物 夜臥其上 貨多陶器 大小相套 無所隙地”). 또한 마도 해저의 침몰선에서 출수된 도자의 밑굽에 무역상의 성인 ‘楊·林·張·鄭’과 상단을 의미하는 ‘綱·綱首’ 등이 墨書된 것은 한 배에 여러 강이 타고 왔음을 증명해주고 있다(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0 『800년 전의 타임캡슐』, 28-34면). 결국 서덕영과 함께 온 상단의 규모를 보건대, 한 배로 오기에는 다소 작다고 여겨지므로, 구적·서덕영은 작은 배, 서덕영·오세전 등은 중형의 배에 인원과 화물을 싣고 함께 출발하여 고려에 같이 도착하였을 것이다.

오세전은 142인의 상단—綱—을 거느리고 있었다.³⁷⁾ 서덕영의 상단은 9년 사이에 규모가 조금 커졌지만, 오세전의 그것보다는 작은 편이며, 세 번에 걸쳐 다른 상단과 함께 왔다. 서덕영이 고려를 여러 차례 왕래하였으며, 고려와 송 정부를 대신하여 외교적 역할을 한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배를 소유한 운선업자라는 증거가 될만한 사료는 찾을 수 없으며, 함께 온 인원만으로는 大商에 들지도 못하였다고 여겨진다.

한편, 『고려사』에 기재된 송도강의 이름과 상인의 숫자는 시박사에서 발급한 공빙에 적힌 강수의 이름과 인원수를 근거로 하였을 것이다. 예를 들어 1106년에 강수 이충(李充)은 송 천주인으로 자기 배 1척으로써, 뱃일을 하는 수수(水手)를 모으고, 일본에 가서 무역—廻貨—하고자, 명주시박무에서 추해(抽解)를 하고 공빙을 발급받았다. 공빙에는 강수 이충, 초공 임양(林養), 잡사 장권(莊權), 부령(部令) 병제(兵弟) 등 4명의 상급 선원이 있었고, 아래에 수수는 삼갑(三甲)—갑은 組 또는 班의 뜻—으로 나뉘어 66인 등 모두 70명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또한 공빙에는 적재화물, 배에 준비된 물품과 더불어 상고인(商賈人)이 엄수해야 할 주의사항이 적혀 있었다.³⁸⁾

이처럼 송상의 해외출항 허가증에 해당되는 공빙—公據—에는 상인의 무리를 대표하는 사람과 참여 인원 전부의 이름을 적어놓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입국을 확인할 때 인원을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고려사』에 기록된 구적·서덕영·오세전 등은 상단의 우두머리[綱首]로서 출발지에 신고하고 시박사에서 공빙을 받은 당사자였을 것이다. 인원수 역시 고려의 관원이 입국할 때에 확인하였을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공빙에 적힌 것이 가장 중요한 참고자료였을 것이다. 강수가 송 시박사에 공빙을 신청하여 받는다면, 공빙에 강수의 이름이 가장 먼저 기록된다는 것은 송 강수—도강—는 상단 대표자 지위에 있다는 것을 가리키며, 그것은 송 강수가 자신은 물론 동반한—같은 공빙에 기록된— 인원

37) 『漢和大辭典』에도 강수와 도강의 용례는 나오지 않으며, 강 용례의 하나로 화물을 총괄하는 사람의 칭호라고 하였다[諸橋轍次, 『漢和大辭典』 8, 1099면. “凡貨物之括總者曰綱, 在宋有花石綱, 今尚有茶綱·鹽綱之類(『宋史』朱勳傳)”].

38) 龜田明德, 1992 『唐代陶磁貿易の展開と商人』 『アジアのなかの日本史』(荒野泰典·石井正敏·村井章介 編), 東京大學出版會, 129면.

전체의 책임을 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강수가 거느린 인원이 많아지면 무역의 규모도 더 커지겠지만 책임져야 할 사람도 많아지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수가 발급받은 공빙에 적힌 상인이 고려에 귀화하는 경우, 송에 귀국하면 강수가 문책을 받았을 것이다. 하물며 강수 자신이 고려에 귀화하는 일은 송으로의 귀환을 포기하는 것이며, 공동운명체인 강의 구성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결단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고려사』에 실려있는 서덕영에 관한 내용 자체만으로는 그가 고려에 귀화한 사람이라고 볼만한 증거는 없었으며, 대부분 사료는 송나라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송대사 관련 사료를 검토하여 그의 출신지에서는 그를 어떻게 기록하였는지 고찰해보겠다.

- D1. (紹興三十二年) 是月 明州言 高麗國綱首徐德榮 至本州言 本國欲遣賀使 詔守臣韓仲通說諭 許從其請 殿中侍御史吳芾言 高麗與金人接壤 爲其所役 如紹興丙寅³⁹⁾
- D2. 紹興三十二年 綱首徐德榮 至明州言 本國欲遣賀使 有旨令守臣韓仲通許之 殿中侍御史吳芾言 高麗與金人接壤 爲其所役 紹興丙寅 常使金稚圭入貢 至明州 朝廷懼其爲間 亟遣之回 方兩國交兵 德榮之情可疑 今若許之 使其果來 則懼有意外之虞 萬一不至 卽取笑於夷狄 乃詔止之 孝宗皇帝朝 始復通使⁴⁰⁾
- D3. (紹興 32년 4월) 辛未 … 上爲永嘉郡主輟視朝 聞泛使禮物例用金器二千兩 銀器二萬兩 合十具匹物二千 朝士言 三月十七日得旨 許高麗遣使 來賀恢復疆土 蓋綱首徐德榮爲嚮導 而明守韓仲通爲請於朝 衆論以爲不然 會浙東提刑樊 光遠畫七不可之說 其議遂閣⁴¹⁾
- D4. 隆興 二年 四月十四日 明州奏 進武副尉徐德榮船白(自?)高麗 入定海縣港 稱去年五月被旨 差載國信往高麗國 今回 復有彼國人使內殿崇班趙冬曦·左侍禁孫子高·客軍朴光通·黃碩 親隨趙鳳·黃義永·從得儒·朴珪及國信在船 聽旨 詔令趙子浦差官 且於定海縣管接 詢問差發因依 有無表章 國信速先申尙書省⁴²⁾
- D5. (乾道 5년) … 頃歲 膠西大捷之後 海波不驚 而降者言 始謀本欲直犯吾境 或譌傳連結高麗者 上下疑之 王益治戰艦 嚴閱習 以張軍聲 遣郡人徐德榮覘之 得要領以歸 遂寬東顧之憂 (乾道) 六年 …⁴³⁾

39) 『建炎以來繫年要錄』 권198, 高宗 紹興三十二年.

40) 『寶慶四明志』 권6, 郡志, 敘賦下 市舶.

41) 『文忠集』 권163, 親征錄.

42) 『宋會要輯稿』 蕃夷 7之49.

D1. 『건염이래계년요록』—이하 『요록』으로 줄임—의 기록이다. 내용상으로 『송사』 『고려전』과 거의 같은데, 서덕영의 직함을 ‘고려국강수’라고 적었다. 이에 저자는 서덕영이 ‘본국’이라고 부르고 있는 점 때문에 단순히 송과 고려를 왕래하던 송인 해상으로 보지 않고, 송측에서는 그가 고려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고려강수’라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⁴⁴⁾

D2는 『보경사명지』의 기록이다. 고려강수 서덕영은 본국이 하례의 사절을 보내고자 한다고 하였고, 황제가 조서로 수신 한중통에게 허락하도록 지령하자, 전중시어사 오불이 ‘고려는 금인과 땅을 접하여 그들의 부림을 받고 있습니다. 소흥 병인년—1126년—에 김치규가 입공하여 명주에 이르렀는데, 조정은 우려하여 바로 돌려보냈고, 바야흐로 양국이 전쟁하고 있으니 서덕영의 뜻이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허락하여 사신이 과연 온다면 의외의 근심이 생길까 두렵고, 만일 오지 않으면 이적(夷狄)에게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라고 아뢰었으므로 황제가 조서로 중지시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록에서 서덕영이 전한 고려의 요청을 오불이 반대하는 이유가 구체적이며, 서덕영을 다시 적으면서 성을 생략하고 덕영이라고 한 것도 주의해서 볼 점이다. 또한 서덕영이 전달하는 내용이 고려와 관계된다는 것은 전중시어사 오불의 주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D3은 『문충집』 『친정록』 일부이다. 1162년 조사가 말하기를 3월 17일 고려가 사신을 보내 강토를 회복한 것을 하례하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대개 강수 서덕영이 향도가 되어 한 일이고, 명주 수령 한중통이 조정에 청하였던 것이라고 하였다. 향도는 송 관원의 부탁을 받고 행한 일이라고 해석되므로 서덕영은 송나라 사람이어야 맞다. 이 기사에서도 서덕영은 그저 송 강수일 뿐이다.

D4는 『송회요집고』에 있는 내용이다.⁴⁵⁾ 1164년 4월 14일에 명주가 아뢰기를 ‘진무부위 서덕영의 배가 고려에서 와서 정해현 항구로 들어왔는데, 서덕영이 작

43) 『攻媿集』 권86, 皇伯祖太師崇憲靖王行狀.

44) 김영제, 2019 『송도강 탁영과 서덕영의 정체』 앞의 책, 135면.

45) 『宋會要輯稿』는 송대 전장제도의 변천을 각 부분별로 집대성한 서적이다. 『永樂大典』에 수록된 『宋會要』의 관련 내용을 집록하여 편찬하였다. 송대 수차례에 걸쳐 찬수된 회요는 명초까지 대부분 보존되어 있어서 『永樂大全』을 편찬할 때 유형별로 분류하여 편입시킨 바 있다(이근명 외 엮음, 2010 『史書』 『송원시대의 고려사 자료』 1, 신서원, 100면).

년 5월의 지를 받들어 국신(國信)을 신고 고려국에 갔으며, 지금 저 쪽의 사절인 내전승반 조동희·좌시금 손자고·객군 박광통·황석·친수(親隨) 조봉·황의영·종득유·박규 및 국신을 배에 싣고 되돌아왔으니 지를 내려주기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조하여 명하기를 조자포(趙子浦)를 보내고 또 정해현의 주관으로 맞이하여 순문하며 차발(差發)하였으나 표장(表章)과 국신이 없어 빨리 상서성에 아뢰게 하였다는 것이다.⁴⁶⁾ 이 기록은 서덕영이 1163년에 송 조정의 지(旨)를 받아 국신을 가지고 고려에 갔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고려의 사신과 국신을 신고 되돌아왔음을 알려준다. 서덕영은 송 조정의 명을 받아 외교적 일을 수행하는 소위 어용상인적인 성격이 있었던 것이다.

D5는 송 송헌정왕(崇憲靖王) 행장의 일부분이다. 내용은 예전에 교서대첩(膠西大捷) 후에 해상전투[海波]가 일어나지 않았으나 항복해온 자가 비로소 우리—송—의 경계를 범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혹은 고려와 연합한다는 거짓말도 있어서 상하가 의심스러워하니 왕이 더욱 전함을 다스리고 엄히 사열하고 익혀서 군성(軍聲)을 펼쳤으며 군인(郡人) 서덕영에게 엿보게 하니 요령을 얻어 귀국하였고, 드디어 동고의 근심(東顧之憂)이 가라앉았다고 하였다.⁴⁷⁾

송의 종실인 송헌정왕은 건도 3년—1167년—에 다시 명주를 맡게 되는데, 이 기사 다음이 건도 6년(1170)이므로 1169년에 일어난 일이다. 동고의 근심은 그 앞에서 언급한 (금군이) 송의 경계로 직접 쳐들어올 것[直犯吾境]에 대한 우려를 뜻한다. 그런데, 이 때 군인 서덕영이 송헌정왕의 명을 받고 고려에 가서 정보를 얻고 왔던 것 같다. 여기서 군인 서덕영이 속한 고을은 송헌정왕이 다스리는 명주이므로 군인은 명주사람이라는 뜻이다. 1169년에 명령을 받은 서덕영은 송나라 사람이었음에 틀림없다.⁴⁸⁾

46) 이 부분의 해석은 저자가 제시한 사료를 참고하였다. 다만, 저자가 黃義永·從得儒·朴瑋 부분을 황의·영종과 유생 박규로 해석한데 반해(김영제, 2019 『송도강 탁영과 서덕영의 정체』 앞의 책, 135면), 필자는 모두 인명으로 해석했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이 차이는 저자와 필자 사이의 논지 전개나 논증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47) 김영제, 2019 『고려 도강을 이용한 해상무역』 앞의 책, 165면

48) 서덕영은 고려의 자료에 일관되게 송상으로, 송의 기록에는 고려강수 또는 고려의 소식을 전한 郡人—명주인—으로 나온다. 송과 타국을 왕래하는 인물의 취급은 민족적 귀속이 아니라 송에서 봐서 파견주가 어디인가라는 것에 의존한다고 한다(榎本涉, 앞의 책,

다음으로 기록 사이에 연관성을 파악해보자. D1, 2, 3은 소흥 32년의 서덕영이 고려가 사신을 보내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내용이 공통되고 있으며, A2의 『송사』 고려전과도 통하는 바가 있다. 그런데, 『宋史』 고려전에서는⁴⁹⁾ 고려강수 서덕영으로, D1의 『건염이래편년요록』에서는⁵⁰⁾ 고려국강수 서덕영, D2의 『보경사명지』와⁵¹⁾ D3의 『문충집』에서⁵²⁾ 강수 서덕영으로 소개하고 있다. 정사류에서는 강수 서덕영의 국명을 앞에 붙인데 반하여, 묘비명과 지방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편찬자가 전자에서 고려를 더했거나 후자에서 고려를 삭제했을 것이다. 이 경우 기록의 선후 관계가 원형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문충집』의 「친정록」이 가장 앞선 것이고, 『송사』 고려전이 가장 늦게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송사』 고려전과 『건염이래편년요록』의 편찬자는 『문충집』 등에 있던 강수 서덕영에 관한 기록을 옮기면서 ‘고려’ 또는 ‘고려국’을 추가했지만, 『보경사명지』에서는 편찬자가 본 원자료 그대로 강수 서덕영으로 적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고려강수 또는 고려국강수는 『송사』와 『요록』의 편찬자가 뒷부분에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임의로 삽입해 넣은 것이며 서덕영의 정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여겨진다.

『문충집』 「친정록」을 지은 이는 해당 부분에서 강수 서덕영이 향도가 되어 고려 사신을 오게 했다는 것으로 그가 명주의 지시를 받고 수행한 일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송사』와 『요록』은 서덕영이 전체의 주어에 해당되므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놓아야 그 다음의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파악할 수 있어서 편찬자가 의도적으로 ‘고려강수’ 또는 ‘고려국강수’라고 적었을 것이다. 당시 명주에 오는 배는 주로 고려와 일본이어서 ‘고려강수’라고 하여 고려에서

78-80면).

49) 『송사』 496권은 원 지정 5년(1345)에 脫脫 등에 의해 완성되었다(이근명 외 엮음, 앞의 책, 140면).

50) 『建炎以來繫年要錄』 200권은 남송 시기 李心傳이 건염 원년(1127)부터 소흥 32년(1162)까지 36년간의 사적을 기록한 편년체 사서이다(이근명 외 엮음, 앞의 책, 223면).

51) 『寶慶四明志』는 총 21권으로 보경 연간(1225~1227년)에 羅濬이 찬수한 명주 지방지이다(이근명 외 엮음, 앞의 책, 37면).

52) 『文忠集』은 周必大(1126~1204)의 문집으로 내용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사료적 가치가 높다(이근명 외 엮음, 앞의 책, 391면).

왔음을 분명히 해준 것이다. 송대의 해상들이 고려와 일본 가운데 특정 국가를 다니며 무역을 하고 겸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고려강수는 서덕영이 고려를 전문적으로 다니는 강수였음을 알려주는 것이었다.⁵³⁾

이와 더불어 D4에서 기록된 서덕영에 대해 ‘진무부위’라는 무산계를 적은 것도 서덕영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데 도움이 된다. 저자는 서덕영에게 진무부위라는 무산계가 있는 것에 대해 외국인이 천주에서 무산계를 받은 경우가 있고, 서덕영의 무산계는 황제가 심부름을 보낼 때 준 것으로 국적과는 상관없으며, 중국 황제가 주변국 국왕에게 자기네 관직을 붙인 사례가 허다하다고 하였다.⁵⁴⁾

서덕영이 1164년의 전년 5월에 지(旨)를 받고 국신을 신고 고려국에 갔다는 것[被旨 差載國信往高麗國]과 C4의 『고려사』에서 1163년 서덕영이 송 황제의 밀지[宋帝密旨]를 바쳤다는 것 등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저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진무부위를 가지고 갔을 것이다. 송에서 다른 나라에 가는 해상에게 무산계의 직함을 제수하는 것은 ‘공식 사절’로서 권위를 높여주기 위한 것이다. 사례로써 보건대, 송에서 사신의 임무를 띠고 1122년(인종 즉위)에 고려에 왔던 송 지첩사(持牒使)·진무교위 요희(姚喜)가 있고,⁵⁵⁾ 1130년 4월에 진무교위 왕정충(王正忠)도 고려에 와서 고려 국왕에게 중화전에서 송 황제의 조서를 전하였다.⁵⁶⁾ 요희는 첩을, 왕정충은 조서를 가져왔다고 하니 송 황제의 밀지를 전달하는 사신의 임무를 수행한 서덕영과 공통되는 점이 있다.⁵⁷⁾ 이들은 송 조정 또는 황제가 고려에 보내기[宋遣] 위해 진무교위 또는 진무부위의 직함을 제수하였을 것이다. 서덕영의 사례를 비롯하여 어느 경우라고 하더라도 고려 사람에게 송나라 무산계를 제수하고 고려에 가는 사신의 임무를 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서덕영을 고려 사람으로 보아서는 안되는 이유의 하나이다.

53) 森克己, 1956 『日本・高麗來航の宋商人』 『朝鮮學報』 9(1975 『續日宋貿易研究』, 國書刊行會), 339-341면.

54) 김영제, 2019 『송도강 탁영과 서덕영의 정체』 앞의 책, 151면.

55) 『高麗史』 권15, 世家 인종 즉위년 6월 丁未.

56) 『高麗史』 권16, 世家 인종 8년 夏四月 甲戌.

57) 그밖에 1120년 7월에 송이 承信郎 許立과 進武校尉 林大容 등을 보내왔다고 하는 기록도 있다(『高麗史』 권14, 世家 睿宗 15년 추7월 壬戌).

이러한 서덕영의 어용상인적 성격은 D1~5 사료 전체의 내용 속에서 서덕영의 역할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다. 서덕영은 D1에서 고려의 사신처럼 보이지만, D3과 D4에서 모두 송의 지시를 받아 고려와 관련된 외교적 임무를 완수하였으며, D5에서도 고려에 가서 정세를 알아보고 오는 일을 하였다. 이처럼 송에서 고려에 가는 사신과 같은 역할을 세 번이나 맡기면서 고려에 귀화한 사람에게 부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서덕영이 고려에 귀화한 사람이 아니라는 정황적 증거이다.

탁영과 서덕영의 직함인 ‘고려강수’에서 강수였다는 점과 고려에서 돌아오는 곳이 명주라는 곳에 주목해보자. 강수는 해상 조합의 우두머리로서 선주 혹은 경영을 같이하는 해상 동료들에 의해 선임되고, 부강수[脇船頭]의 보좌를 받았다.⁵⁸⁾ 강수라는 용어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중국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강수는 고려나 일본과 같은 외국에서도 중국 해상의 우두머리를 지칭하는 용어로 되었다. 일본의 하카타강수[博多綱首]가 그에 해당할 것이며, 고려에서도 강수 대신 도강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의례에서 도강과 강수가 혼용되는 것을 보면 고려 사람들에게도 친숙한 것이었으며, 그들은 중국 상인임이 틀림없다. 반면에 송나라 사람들이 외국에서 온 상단의 우두머리를 그 나라의 이름을 덧붙여 고려강수 또는 일본강수라고 호칭하였을 것 같지 않다.

그러한 사실은 고려와 일본을 다니는 무역선의 출발항이자 귀환항이었던 명주 지방지의 기록과도 상통한다. 『보경사명지』에서 ‘무릇 중국 상인[中國之賈]으로 고려와 일본의 여러 번[諸番]에서 중국에 이르는 자는 오직 경원(慶元)에서만(공빙을) 얻어 간다’고 하였는데,⁵⁹⁾ 여기서 고려와 일본을 다니는 자로서 중국 상인만을 상정하고 있다.⁶⁰⁾ 따라서 중국 상인은 송의 강수가 거느리며 해외에 가서 무역하는 사람들을 뜻하므로 명주에 보고하는 강수 서덕영은 중국 상인 즉 송상일 수 밖에 없다.

58) 斯波義信, 1968 『宋元時代における交通運輸の發達』 『宋代商業史研究』, 風間書房, 87면.

59) 『寶慶四明志』 권6, 市舶 “凡中國之賈 高麗與日本諸番之至中國者 惟慶元得受而遣焉”

60) 森克己도 『寶慶四明志』에 언급된 고려와 일본에서 온 자들은 실제로 고려인과 일본인이 아니라 고려와 일본을 다니던 송상을 뜻한다고 하였다(森克己, 앞의 논문).

이상에서 저자가 고려에 귀화했다고 주장하는 송도강 탁영과 서덕영에 관한 사료를 재검토하였다. 두 사람에 대해 『송사』 고려전에서 고려강수라고 직함을 붙였는데, 『고려사』와 송대사 문헌 기록을 개별적으로 해석하거나, 양 사서의 내용을 연계시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어느 경우에도 탁영과 서덕영이 송상이라는 정체는 바뀐 적이 없다. ‘강수’는 중국인 상인을 부르는 명칭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나라의 이름은 강수의 국적이 될 수 없다. 이점을 감안하건대 『宋史』 고려전의 고려강수 탁영과 서덕영은 ‘고려인’ 강수로 해석될 수 없으며, 강수 앞의 ‘고려’는 자주 다니는 나라 또는 전문적으로 다니는 나라를 뜻하는 것이다. 다만, 『송사』 고려전과 『요록』과 같은 사서의 편찬자가 해당 기사 내용을 파악하기 쉽게 탁영과 서덕영에게 원사료와 달리 고려를 덧붙이면서 ‘고려강수’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4. 『고려사』와 『대각국사집』의 송도강과 강수

저자는 1033년(덕종 2) 8월에 송 천주상 도강 임애(林藹)를 필두로, 1229년(고종 16) 2월 송상 도강 김인미(金仁美)에 이르기까지 31건의 송도강 사례를 제시하고, 고려라고 하는 한 국가에 귀화한 도강이 1·2명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며, 『고려사』 세가에 나타나는 송도강 가운데는 고려에 투화해왔던 사람들도 꽤 있었다고 추정하였다.⁶¹⁾ 저자는 송의 기록에 등장하는 ‘고려해상’의 활동 근거를 대기 위해서 그들을 실어줄 사람과 배가 필요하여 송도강을 귀화인으로 만들고자 했는데, 저자가 제시한 송 도강의 경우 고려에 귀

61) 김영제, 2019 『고려 도강을 이용한 해상무역』 앞의 책, 168-169면. 저자는 이어 ‘의종 2년 10월에 송도강 임대유가 역모 사건에 관련된 증거를 고려 조정에 알리고 있는데, 그는 의종 3년 8월과 5년 8월에도 왔다. 처음 온 임대유가 이러한 일을 한 것은 귀화한 도강으로 활동하다가 그 비밀을 접하고 조정에 신고한 것이 아니었나하는 생각이 든다. 의종 2년 임대유와 함께 왔던 郭英, 張華, 黃世英, 陳誠 등과 의종 3년에는 황고와 함께 왔는데, 심증으로는 이들도 서덕영이나 탁영처럼 귀화한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김영제, 2019 『고려 도강을 이용한 해상무역』, 170면).

화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전혀 없는 것 같다.

오히려 저자가 찾지 못한 다른 기록은 송 도강이 고려 귀화인이 될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다. 우선 국가적인 의례인 팔관회에서 송 도강이 누구를 지칭하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 정체를 파악하는 실마리를 찾아보자.

E1. 大會日坐殿 王初御宣仁殿 … 次曲直華蓋 分東西上階 輿輦符寶等 竝還列儀鳳門內訖 閣門引宋綱首等 就聞辭位立定 閣門奏聞辭云 大宋都綱某等祇候朝賀 訖引就拜位跪進物狀 閣門接上俛伏興舍人喝 再拜行頭奏聖躬萬福奏山呼再拜 行頭進步退復位奏山呼再拜 次傳宣賜坐看樂兼賜所司酒食訖 奏山呼再拜卷班西出就幕次 次引東西蕃子 次引耽羅人 朝賀及傳宣禮 並與宋綱首同.⁶²⁾

E1은 중동팔관회 '대회일좌전'의 의례 부분이며, 강수가 참여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국왕이 먼저 선인전에 입어하고 나서 (중략) 다음으로 곡직화개(曲直華蓋)가 동서 위 쪽 계단에 나누어지고 여연(輿輦)과 부보(符寶) 등은 모두 의봉문 내에 등글게 늘어선다. 이를 마치면 합문이 송에서 온 강수 등을 인도하여 문사위(聞辭位)에 자리하여 정렬해 서게 한다. 합문이 문사를 아뢰기를, “대송 도강 모 등이 삼가 문안하고 조하하려 합니다.”라고 한다. 이를 마친 뒤 송 강수는 배위에 자리하여 꿇어앉아 물장(物狀)을 올리고, 사인의 구령에 따라 재배한다. 이어 그는 국왕의 명을 받아 자리를 잡아 음악을 구경하고 술과 음식을 받아 나와 서쪽의 막차에 자리하는 것으로 의례의 참여를 마친다. 다음으로 동·서 번자(蕃子)를 인도하며 이어 좌집례관이 탐라인을 차례로 인도해 조하 및 전선(傳宣)하는 의례는 모두 송 강수에게 행하는 의례와 같다는 내용이다.

팔관회 대회일에 동서이경·동북양로병마사·4도호·8목의 장관이 각각 표를 올려 진하하고 난 뒤, 송상객·동서번자·탐라인 등이 방물을 바치고 자리에 앉아서 의례를 보기 시작했던 것은 1034년(정종 즉위)의 팔관회 때부터이고 뒤에 상례화되었는데,⁶³⁾ 『고려사』 예지에 실린 팔관회 의례는 언제 제정된 것인지 확

62) 『高麗史』 권69, 禮11 嘉禮雜儀 仲冬八關會儀.

63) 『高麗史』 권6, 世家 靖宗 즉위년 11월 “庚子 設八關會 御神鳳樓 賜百官醕 夕幸法王寺 翼

실하지 않다. 다만, 송상객·동서번·탐라국 등의 참가자가 『예지』와 거의 유사하므로 처음 시행될 때에도 비슷한 방식의 의례가 행해졌으며, 여러 차례 팔관회를 지내면서 조금 더 의례가 정교해졌을 것이다.

이 기록에서 ‘송강수’는 ‘대송도강’과 같은 자이며, 『고려사』 세가의 기록대로라면 그는 송상객이다. 규정에서는 팔관회에 송의 상객을 대표하여 의례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 송강수라고 지칭하였지만, 실제 행사에서 전체 참가자들이 듣는 호칭은 대송도강이었던 것이다. 전자는 팔관회 참여자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객관적인 표현이고, 후자는 고려에서 사용하는 그들에 대한 호칭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참여자로 지칭된 동서번자와 탐라인도 의례에서는 그들이 고려에서 받은 향직이나 무산계 또는 여진추장·탐라성주 등 보다 권위있는 호칭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고려 사람들은 송나라에서 온 강수이고 상객의 대표라는 것을 알면서도 의례에서는 참가자들이 누구나 알 수 있는 고려식 존칭인 ‘대송도강’으로 바꾸어 썼던 것이다. 결국 송도강은 송강수와 같은 것이다. 주로 사용하는 나라가 고려와 송이었다는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도강은 두강이라는 다른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문법 체계가 다른 고려적인 한자 활용이었다고 생각된다.⁶⁴⁾

이제 사서가 아닌 개인 문집에 기록된 송 도강은 어떤 존재였을지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문집의 용례를 검토해보자. 11세기 말에 수많은 송의 승려와 서신을 주고 받았던 의천의 문집 가운데 송나라 승려들의 글을 담은 『대각국사외집(大覺國師外集)』에 비교적 많은 사료가 있다. 다음의 기록 가운데 도강의 실체를 알려주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석해보겠다.

日大會 又賜醮觀樂 東西二京·東北兩路兵馬使·四都護·八牧·各上表陳賀 宋商客·東西蕃·耽羅國 亦獻方物 賜坐觀禮後以爲常.”

64) 『高麗史』 권71, 樂2 俗樂 禮成江 “昔有唐商賀頭綱善棋 嘗至禮成江 見一美婦人 欲以棋賭之 與其夫棋 佯不勝 輸物倍其夫利之 以妻注 頭綱一舉賭之 載舟而去 其夫悔恨作是歌 世傳婦人去時 柁束甚固 頭綱欲亂之不得 舟至海中 旋回不行 卜之曰 節婦所感 不還其婦 舟必敗 舟人懼 勸頭綱還之 婦人亦作歌 後篇是也.”

- F1. 淨源三月內附都網洪保書一封 鑪拂 絕句一首 必達檢收 近李元積至 伏蒙殿下親筆⁶⁵⁾
- F2. 今春二月內 都網洪保來 得書三通 退剖教宗 歷叙師友 玩味其辭 若對面語 … 外有清涼國師石本雜文 俟後次馳上 洪保理行 值紬繹祖訓 言不盡意⁶⁶⁾
- F3. 希仲啓 初二日 晉仁回 跪領書一通 竊審高麗國手暨法門僧統 令禮賓省 發牒 至明州請差□與綱首洪保送金銀信等 至仍進呈朝廷 下情無任 伏增抃躍⁶⁷⁾
- F4. 大宋國兩浙傳祖教老僧淨源 復書 … 正月十有九日 都網李元積至 得去年九月書 辭意勤拳 才識寅亮 鋪三經之讜義 貢三家之遵文 邈迨紬繹 使人樂而不自覺⁶⁸⁾
- F5. 辯眞啓 … 李綱首廻 承惠及海東李公類所□夾注金剛經一冊 斷疑金剛經 一冊 金剛經集解一冊 并教藏摠錄二冊 唯識論單科 三冊 灌手焚香 捧授之次 良增感愧 … 兼聞海東有大平廣記 可得觀光否 今因李綱首二十郎去次 謹奉啓⁶⁹⁾
- F6. 泊去年八月十五日 都綱(綱)李元積 至得捧二月書教一通 并手撰花嚴普賢行願懺儀·大方廣圓覺懺儀 大佛頂首楞嚴懺儀·原人論發微錄·還源觀疏補解·孟蘭盆禮贊文·教義分齊章科文等八本 共盛一者 受以還 披閱無⁷⁰⁾

F1은 송나라 승려 정원이 의천에게 보낸 서신이다. 정원은 3월 안에 도강 홍보(洪保) 편에 편지 한 통과 향로 등을 보내겠다고 하였으며, 이월적이 오는 편에 의천의 편지를 받았다고 하였다. F2는 누가 썼는지 확실하지 않은데, 올 봄 2월 도강 홍보가 오는 편에 의천이 보내준 편지 세 통을 받았으며, 청량국사(淸涼國師)의 『석본잡문(石本雜文)』은 다음을 기다려 홍보 편에 의천에게 부치겠다고 하였다. F3은 송나라 승려 희중(希仲)이 의천에게 보내는 서신이다. 삼가 초이튿날 진인(晉仁)이 돌아오는 편에 주신 편지를 삼가 잘 받았으며, 고려 국왕과 승통—의천—이 예빈성으로 하여금 편지를 보내게 하여 명주에 이르렀는데, 보내신 사람과 강수인 홍보에게 청해 금·은과 서신을 조정에 바쳤다고 하였다. F1과 F2에서 서신을 전달하는 인물이 도강 홍보였고, F3에서 고려 예빈성의 글을 정원에게 전한 사람은 강수 홍보였다.

65) 『大覺國師外集』 권2, □□□□□書 第六.

66) 『大覺國師外集』 권2, □□□□□書 第四.

67) 『大覺國師外集』 권7, 傳祖教學徒希仲狀 二首 第二.

68) 『大覺國師外集』 권2, □□□□□書.

69) 『大覺國師外集』 권5, □□□□□.

70) 『大覺國師文集』 권10, 上淨源法師書 四首 第一.

F4는 정원(淨源)이 다시 보낸 서신이다. 정월 19일 도강(都綱: 綱) 이원적이 이르러 지난해 9월에 의천이 쓴 편지를 받게 되었다고 하였다. F5는 송나라 승려 변진(辯眞)이 의천에게 보낸 편지이다. 변진은 이강수가 돌아오는 길에 은혜를 베풀어 보내주신 해동의 이오(李顛)가 지은 『협주금강경(夾注金剛經)』 1책 등을 받았으며, 『태평광기』를 얻어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천에게 묻는 서신을 이강수가 십랑(李綱首二十郎)이 가는 편에 보내고 있다. F6은 의천이 정원에게 보낸 서신이다. 지난해 8월 15일에 정원이 쓴 편지를 2월에 도강 이원적이 이르러 서신 1통과 손수 찬술한 『화엄보현행원참의(花嚴普賢行願懺儀)』 등을 의천이 받았다고 한다.

F4에서 정원에게 서신을 전한 것은 도강 이원적이었고, F5에서 의천의 서신을 변진에게 전하고, 다시 고려에 가서 변진의 서신을 의천에게 전하는 자를 이강수라고 하였다. F6에서는 도강 이원적이 정원의 서신을 의천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므로 F5의 이강수는 당시 고려를 자주 왕래하던 이원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송상 이원적(李元績: 績)이 1081년 8월에 고려에 와서 토물을 바쳤는데,⁷¹⁾ 한자가 다를 뿐 이원적과 같은 인물이었으며 그는 송상이었음이 분명하다.

이상에서 고려와 송을 오가며 양국 승려에게 서신을 전달한 자는 이원적과 홍보 등이었으며 그들은 강수 또는 도강이었으며, 『대각국사외집』에 의하면 서도강(徐都綱),⁷²⁾ 진수(陳壽) 도강, 광도강(郭都綱) 등도 서신과 물품 전달의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도강’은 ‘강수’와 같다는 것이 확인된다. 본래 송 상단의 우두머리인 강수를 고려에서는 도강이라고 불렀고, 의천이 중국의 승려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사용하자, 송의 승려들도 강수가 도강임을 알게 되고 강수와 도강을 구분하지 않고 쓰게 되었던 것 같다. 그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자주 양국을 왕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각국사문집』과 『대각국사외집』에서는 서신과 물품을 전달하는 사람의 이름이나 명칭을 대신하여 해상, 상객,

71) 『高麗史』 권9, 世家 문종 35년 8월 戊辰.

72) 본문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정원이 보낸 서신을 고려의 의천에게 전한 사람이 서도강이었는데(『大覺國師文集』 권11, 『上大宋淨源法師書』 三首 第一), 이는 의천을 도와 송에서 화엄경 판을 구해주었던 송상 서전이었다고 한다[金庠基, 1959 『大覺國師義天에 대하여』, 『국사상의 제문제』 3(1974 『東方史論叢』, 서울대출판부, 212-215면에 재수록)].

행상(行商), 상선, 박고(舶賈) 등과 더불어 ‘배 편[便舟, 便風, 通大舶聿來]’이라는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었으며,⁷³⁾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는 서전(徐戩)을 비롯하여 천주 출신의 해상—泉商, 海客—이 많았다는 견해가 있었다.⁷⁴⁾ 『대각국사외집』의 이원적과 서도강이 각각 『고려사』의 송상과 송 사서의 천주 해상이었다는 사실은 도강과 강수가 송상이었다는 주요한 근거가 된다.

더욱이 그들은 마음대로 양국 승려의 서신전달자 임무를 했던 것은 아니다. 송나라 승려 정원은 고려의 의천과 주고받은 편지 가운데에서 의천에게 답장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왕년에 행자 안현(顏顯)이 와서 전한 수교(手敎)를 받고 감격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소목(蘇牧: 소식)이 서간을 갖고 왕래하지 못하도록 상선을 엄하게 단속하면서 모두 불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답장을 올리지 못한 것일 뿐이요, 나태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라고 하였다.⁷⁵⁾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송의 시박사 등에서 출항 과정에서 종이에 쓰인 서신을 몰래 가지고 나가지 못할 만큼 철저히 검사를 했을 뿐 아니라 그러한 비법의 일을 저지른 자에게 주살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소식은 송상이 고려를 왕래하며 서신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송상이 하는 무역과는 동떨어진 일이며, 송나라의 여러 가지 내부 정보가 고려로 누설되는 것을 우려하여 내린 조치였을 것이다.

실제로 송나라는 해외를 다니는 해상들의 출입을 엄격하게 관리하였다.⁷⁶⁾ 그 과정에서 송과 고려를 왕래한 송 도강조차 쉽게 통과할 수 없을 만큼 인원과 물품을 통제하고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다. 송 도강이 양국을 왕래하며 서신을 전달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상이 외국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거나, 심지어 선주이자 상단의 대표로서 시박사의 허가를 받고 나간 강수가 고려에 귀화한 뒤 국적을 바꾸어 외국인—고

73) 李鎭漢, 2007 『高麗時代 宋商 貿易의 再照明』 『歷史教育』 104(2011 『高麗時代 宋商往來研究』, 景仁文化社, 70-74면에 재수록).

74) 金庠基, 앞의 책, 215면.

75) 『大覺國師文集』 권11, 『上大宋淨源法師書』, 三首 第三 “往年 行者顏顯到來 曾辱手敎 不勝銘佩 是時 聞蘇牧斷截商船 持書往復者 俱罹非法之誅 是以未敢裁答 非怠故也.”

76) 이에 관해서도 후고에서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려강수—으로 입국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

본고에서 ‘고려강수’였던 탁영과 서덕영이 과연 고려에 귀화한 자였는지를 알아보고자 해당 인물 사료를 전부 살펴보고, 『고려사』와 문집에서 도강과 강수가 혼용되는지를 검토하였는데, 두 사람이 귀화한 후, 고려인으로 대중국 무역에 참여했다는 증거는 되지 못하는 것 같다. 역시 중국 기록에 나오는 ‘고려강수’의 고려는 국적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다니는 지역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더욱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여전히 소위 송 도강의 ‘고려 귀화설’을 완전히 불식시킨 것은 아니므로 다음에는 관련 인물이 아니라 송의 시박사에서 시행되는 해상 관리를 고찰하여 저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선주인 송 도강이 과연 고려에 귀화하여 고려인들을 태우고 다니며 송과의 무역에 종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다.

5. 맺음말

고려시대에는 송상의 왕래가 활발하여 무역을 주도하였으므로 고려 해상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있었다는 것이 그 동안의 정설이었다. 그런데 저자는 최근 저서에서 중국 사서에 나오는 ‘고려상인’의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선박 건조 기술과 항해술이 송에 비해 낮았던 고려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무역할 수 있었던 것은 송 도강이 고려에 귀화한 후 양국을 왕래하면서 고려상인들을 태워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주장을 내세웠는데, 핵심 논거의 하나가 중국의 사서에 나오는 고려강수가 『고려사』에 기록된 송 도강이었다는 점이었다.

그러므로 그것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 ‘고려강수’로 기록된 탁영과 서덕영과 관련된 일체의 기록을 검토해보았다. 먼저 고려강수 탁영은 고려에 가서 송의 망명인을 데려온 공로로 1132년에 황제의 포상을 받았지만, 그는 한 해 전에 송 도강으로서 송의 연호가 바뀌었음을 알리러 왔다는 기록이 『고려사』 세가에 있다. 두 기록을 보건대, 1131년에 탁영이 송의 명을 받고 고려에 와서 연호를 알리는 임무를 수행한 후, 금나라 침입으로 송이 혼란해지자 고

려에 망명한 사람들을 찾아 귀국한 것이었다고 이해된다. 또한 탁영이 송 황제의 포상을 받도록 한 것도 그가 외국인이 아니라 송나라 사람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 한 명의 '고려강수'인 서덕영에 대한 사료는 탁영에 비해 훨씬 많아서 조금 더 실체에 다가설 수 있었다. 서덕영은 1149년부터 1173년까지 적어도 5차례 고려에 왔다는 기록이 『고려사』에 전하는데 4차례는 송도강이라는 직함이었고, 마지막에는 '송이 보냈다[宋遣]'고 표현되어 있어서 처음이든지 마지막이든지 송에서 귀화했다는 근거는 없었다. 아울러 서덕영에 관해서는 중국 사서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고려인 강수로서 송에 보고한 것처럼 보이는 '고려강수'의 기사도 유사한 다른 사서에는 단순히 '강수'만으로 적혀있다. 또한 시기가 다른 서덕영 관계 기록에는 명주의 '군인(郡人)'으로 파악하거나 무산계인 '진무부위' 서덕영이라고 하여 송나라 사람임을 알려주고 있다.

『고려사』와 문집에서 송도강은 어떤 인물이었는지 고찰하였다. 중동팔관회 '대회일좌전'의 의례에 참여하는 '대송도강'과 '송강수'는 용어는 달랐으나 실제로는 같은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며, 그들을 더 큰 범주로 부르는 것은 '송상객'이었다. 문종대에서 숙종대에 활약한 의천의 문집인 『대각국사집』에는 고려와 송을 왕래하며 의천과 중국 승려의 서신 및 물품 교환을 도와준 이원적, 서전 등의 이름이 전하는데 이들의 호칭은 도강이 많이 쓰였지만, 강수도 있었다. 도강은 고려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인데, 송의 승려도 의천을 영향을 받아서 도강이라고 적거나 중국식으로 강수라고도 하였다. 송도강과 강수의 차이는 보이지 않으며, 그들이 고려에 귀화해서 송을 다녔다는 사료는 전혀 없었다.

'고려강수'가 송 도강이었다가 고려에 귀화하여 송을 왕래하는 인물이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여러 사료를 정밀하게 검토해보았으나 구체적인 증거는 전혀 찾을 수 없었다. 탁영과 서덕영을 '고려강수'라고 한 것은 『송사』의 편찬자가 문집 등의 원사료를 보고 인용하며 이해하기 쉽도록 '고려'를 삽입한 것이다. 두 사람이 양국을 오가며 외교적 활동을 하였지만, 그것은 고려와 송을 오가는 해상이 부가적으로 수행하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였으며, 오히려 그 점이 고려 귀화인이 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역시 '고려강수'는 고려인 강수가

아니라 명주를 출입하는 해상 가운데 고려라는 특정 국가를 다니는 강수라는 전문성을 뜻한다는 견해가 사실에 부합하는 것 같다.

이상에서 송 도강이 고려에 귀화할 수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고려강수 서덕영과 탁영에 관한 사료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는데, 다음 글에서는 송의 해상 관리 제도를 통해 송 강수의 외국 귀화가 실현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고찰해보겠다.

주제어 : 고려(高麗), 송사(宋史), 강수(綱首), 도강(都綱), 송상(宋商)

투고일(2021. 10. 23), 심사시작일(2021. 11. 16), 심사완료일(2021. 11. 29)

〈Abstract〉

A Reexamination of Historical Records on Two Goryeo Gangsu
(高麗 綱首: *gangsbow*): Takyoung (卓榮: *Zhuorong*) and Seo
Deokyoung (徐德榮: *XuDerong*)

Lee, Jin-Han *

This is a preliminary study to verify a claim that Song dogang, head of private army of tradesmen in Song Dynasty, became naturalized and worked in Goryeo. We examined records relating to Takyoung and Seo Deokyoung who were titled as ‘Goryeo gangsu’ in the section on Goryeo in the book ‘Songsa(宋史: Songshi).’ Both Takyoung and Seo Deokyoung were seen as tradesmen from Song whether records in ‘Goryeosa’ and documents on the history of Song Dynasty were interpreted separately or examined together.

Next we investigated what kinds of activities Song dogang engaged in as appeared in documents on Goryeo Dynasty. According to ‘Daegakguksajip’ written by a Buddhist priest Euicheon who was active during the reign by King Munjong through King Sukjong, The title ‘dogang’ was frequently used to indicate people who went back and forth between Goryeo and Song to help exchanges of letters and goods between Euicheon and Song priests. The title ‘gangsusu’ also appeared in the documents. ‘Dogang’ was widely used by Goryeo people, and priests of Song Dynasty also used ‘dogang’ instead of ‘gangsusu’ influenced by Euicheon. No difference is observed between ‘dogang’ and ‘gangsusu’, and records could not be found that these people became naturalized in Goryeo and then traveled to Song.

Clearly Takyoung and Seo Deokyoung were called ‘gangsusu’ from Goryeo because a compiler of ‘Songsa’ added ‘Goryeo’ to aid understanding of original documents, and it does not mean that the two people were Goryeo people. They conducted diplomatic activities going back and forth between the two countries, but it was one of many tasks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Korea University.

that marine tradesmen took on additionally, and in fact, such status gave a significant reason for being unable to be naturalized in Goryeo. ‘Goryeo gangsu’ needs to be understood as emphasizing expertise on trade with Goryeo among marine tradesmen from Song dynasty who went through the port of Myeongju(明州: mingzhou), rather than as tradesmen from Goryeo.

Key Words : Goryeo(高麗), Songsa(宋史: Songshi), Gangsu(綱首), Dogang(都綱), Songsang(宋商: Song marine tradesmen).